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소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3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12일

발 의 자: 이소라, 김규남, 김영철,
김원태, 박강산, 박수빈,
박승진, 박유진, 박철성,
서상열, 이영실, 임종국,
전병주, 정준호, 최기찬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지금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
-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그런데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 본인의 휴가만 규정하고 있음으로써, 예비 부모로서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해 제약이 따름
- 이에 임신·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게도 검진 및 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남성공무원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4조제4항의 신설)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④ ~ ⑭ (생략)</p>	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~ ⑱ (현행 제4항부터 제17항까지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조(특별휴가)제4항을 변경·신설하여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동행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임신검진동행휴가의 사용은 배우자의 임신기간¹⁾으로 한정되어 있고, 휴가일수 또한 최대 10일 이기에 휴가사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대체인력 인건비)²⁾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 희 선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1년내 최대 10개월

2) 통상적인 연가의 대직업무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